기증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공고 찾아주세요 입양 열린마당

소중한 생명! 여러분의 반려동물 사랑으로 지켜주세요.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생명존중의 문화를 꽃피웁니다. 반려동물이 크게 늘어난 지금 성숙한 당희목대를 당자하고 중중단당의 단되를 찾아됩니다. 근데당들이 크게 들어진 처음 중국된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과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 및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사람과 둥물이 더불어 사는 생명존중의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http://kcanimal.or.kr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 정보

Home > 동물보호센터 > 동물보호 정보

동물보호센터 소개

유기동물보호절차

동물보호정보

찾아오시는길

사육관련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사육 기본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먹이는 갑자기 바꾸지 말고 데려오기 전부터먹던 먹이를 당분간 (10일 이상)주도록 합시다. 새로운 집에 적응하게 되는 기간은 보통 7일 정도 걸리고 이 기간 동안은 목욕이나 먹이 변화, 이동 등의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삼가도록 합니다. 애견의 목욕은 1~15일에 1회 정도가 적당하지만 일반적으 로 주1회 정도가 무난합니다. 광견병 백신 및 심상사상충 예방은 필수이며 자세한 사항은 수의사 지시에 따르기 바랍니다.



운영시간 및 문의전화

운영시간: 10:00 ~ 17:00

(연중무휴)

점심시간: 12:00 ~ 13:00 입양상담: 13:30 ~ 17:00

(사전예약필수)

062.613.6770

하루에 먹이 주는 횟수는 1일 2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육류는 닭 가슴살이 가장 좋으며 육류의 량은전체 먹이의 3분의 1정도가 좋습니다. 생선은 넙치처럼 살이 흰 종류가 좋으며 곡류는 균형 잡힌 영양섭취를 위해 소량 먹입니다. 양파는 소화가 잘 되지 않으므로 강아지나 고양이 모두에게 좋지 않습니다.

소유자 준수사항

적절한 사육 관리는 동물소유자의 의무입니다.

동물에게 적절한 사료와 깨끗한 물을 주고 운동, 휴식, 수면을 보장하는 한편 동물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신속한 치료를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 동물에게 정기적으로 예방접종을 시켜야 하며, 개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구충을 해야 합니다.

또 번식을 목적으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면 개나 고양이가 수의사가 권고 하는 연령이 되면 중성화 수술(불임수술)을 시켜야 합니다. 기르는 동물 이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털, 소리 냄새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 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개는 사람에 대한 공격성을 줄이기 위해 복종훈련을 시켜야 하며, 공동주택에서 기르는 경우 짖지 못하게 훈련시켜야

동물학대는 법으로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동물 또한 우리와 같은 소중한 생명입니다. 동물을 때리거나 곰쓸개를 채취하는 행위, 개를 목매다는 행위 등 동물학대 행위는 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로 동물을 학대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한 동물을 고의로 유기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출 시 목줄과 이름표를 꼭 챙기세요.

개와 함께 외출할 땐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이 표시된 이름표(인식표)를 개에게 달아줘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0만원 이 <mark>하의 과태료</mark>를 내야 합니다. 이름표 없이 돌아다니는 개는 버려지거나 주인을 잃어버린 것으로 보아 유기 동물 보호시설에 보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이름표를 달아주면 실수로 개를 잃어버려도 찾을 확률이 높겠지요. 그러니 외출 시에는 물론 평상시에도 목에 이름표를 달아주는 센스! 잊지 마세요. 외출 시 다른 사람을 물거나 위협하지 않도록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0만원 이하의 <mark>과태료를</mark> 물게 됩니다. 이때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로 조절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목줄은 호기심 많은 개가 차로도 뛰어들 경우 생길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으니, 사랑한다면 꼭 채우세요.

04 배설물은 생긴 즉시 치워야 합니다.

공원 등 공공장소를 지나다 동물의 배설물 때문에 눈살을 찌푸린 경험, 누구나 한번쯤은 있으시겠죠? 이런 기본적인 에티켓조차 지키지 않는 양심불량 동물소유자 탓에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본답니다. 반려동물(개) 소유자는 공공장소에서의 개의 배설물이 생긴 즉시 치워야하며,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개를 키우고 계시다면, 외출 시 배설물 수거를 위한 봉투와 휴지 꼭 챙기세요.

동물등록제

01 동물 등록제가 뭔가요?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와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생후 2개월 이상 된 개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해 등록하는 제도로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 되었습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등록을 하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동물 및 소유자의 정보가 등록되어 반려견을 혹시 잃어버려도 등록정보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개를 키우신다면, 사랑 하는 반려동물을 위해 동물등록제에 적극 참여해주세요.



02 동물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동물등록을 하려면 반려견과 함께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에 방문하여 수의사의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면 됩니다. 동물등록방법에는 내장형 전자칩·외장형 전자태그·인식표 세 가지가 있으며, 이 중 한 가지를 선택 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 내장형 전자칩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장 정확하고 영구적인 등록방법으로서 15자리 고유번호가 들어있는 마이 크로칩을 반려동 물의 양쪽 어깨뼈 사이 피하부위에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 외장형 전자태그는 마이크로칩이 내장된 펜던트를 목걸이 형태로 장착하는 방식이며 인식표는 소유자의 이름과 전화 번호, 동물등록번호가 적혀있는 이름표를 부착하는 방법입니다.
- 내장형 전자칩과 외장형 전자태그, 인식표는 소유주가 별도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03 동물등록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구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수수료	3~5만원	1만원~	5천원~

※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여야 합니다. 무선식별장치 가격은 동물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04 동물등록은 왜 개만 하나요?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등록대상을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려견만 동물등록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반려견이 가장 많고 유기·유실되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05 동물등록 마이크로칩은 안전한가요?

마이크로칩을 삽입하여 동물등록을 하는 방식은 90년대부터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전하고 영구적인 동물 등록 방법입니다. 동물 등록용 마이크로칩은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된 제품만 사용하고 수의사가 반려견의 건강상태를 판단 후 시술 하도록 하여 부작용을 최 소화하고 있습니다.

06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전시에서는 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13년 12월 31일까지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14년 1월부터 미등록 동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동물보호감시원 등에게 적발될 때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홈 광주광역시청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61027)광주 북구 본촌마을길 25-1 (본촌동 379-2)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센터 | 대표번호. 062-613-6770 | 팩스번호. 062-613-6779 Copyright 2015. 광주광역시청 All Rights Reserved.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자료 중에서 광주광역시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에 대하여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 제 1유형'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며, 자유이용의 경우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